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운영 세칙

제정 2018. 6.27

개정 2018. 6.29

개정 2019. 2.18

개정 2019.10.11

개정 2020. 7.2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생활관운영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방침) 본 대학 RC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C를 주거 공간의 개념과 더불어 내실 있는 인성교육 및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2. 마스터교수 및 학부생조교(Residential college Advisor, 이하 RA)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면학열을 고취한다.
3. 마스터교수와 RA는 본 세칙 제2조의 1의 방침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RC 사생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동료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학업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

제3조 (구성 및 운영조직)

- ① RC는 본 대학 생활관 21동 전체와, 20동(상남관)의 일부 층으로 구성한다.
- ② RC운영조직은 무은재학부장, 생활관장, 마스터교수, RC운영위원회, RA 및 무은재학부 행정팀, 생활관운영팀 RC관계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무은재학부 행정팀은 RA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RC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지원한다.

제 2 장 RC운영위원회

제4조 (RC운영위원회) RC 프로그램 운영 등 RC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RC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구성)

- ① RC운영위원회는 무은재학부 지도교수 중에서 무은재학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무은재생활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은재학부 행정팀장으로 한다.
- ④ 학생지원팀장, 생활관운영팀장, RA회장단은 필요에 따라 배석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RC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논의 및 심의한다.

1. RC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2. RC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심의
3. RC 사생 관련 사항 심의
4. RA 임면 및 활동지도 관리, 간담회
5. 기타 RC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 ① RC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무은재학부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RC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사안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 3 장 RC 지도그룹

제8조 (마스터교수)

- ① 마스터교수는 사생의 지도교수가 그 역할을 한다.
- ② 마스터교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도그룹 학생들의 학업, 진로, RC 생활 등에 관한 상담 및 관리
 2. 지도그룹 학생들의 RC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인성 함양과 다양한 경험 장려
- ③ 마스터 교수는 지도그룹 학생 지도를 위해 RA와 면담할 수 있다.

제9조 (RA 역할) RA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C 사생들의 학업, 진로, 생활 적응 등에 관한 상담
2. RC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무

3. RC 사생 공동체 교육 및 인성 교육
4. RC 사생 생활지도 및 주거 지원 전반
5. RC 사생 응급 처치 및 재난 대응 지원

제10조 (RA 자격) RA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5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정규학기 내 1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 단, 복학예정자는 복학 시점 기준 5학기 이상인 자
2. 임명일 기준으로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 (RA 대우)

- ①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월별 RA활동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활동 경력을 학적에 명기한다.
- ② 사생 부담금이 있는 RC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및 인솔 시 참가비를 면제한다.
- ③ 적극적인 활동으로 타인의 모범이 된 RA에게는 무은재학부 행정팀 평가 및 RA동료 평가 등을 통해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RA 임면 및 임기)

- ① 무은재학부장은 매 학기 RA 정원 및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RA를 선발한다.
- ② RA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최소 연속 2학기, 최대 연속 4학기까지로 한다. 이 때 정규학기 내에서만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RA는 임기 내 휴직 또는 사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질병 및 사고, 학적 변동, 기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지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은재학부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징계, 업무 태만 등 RA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무은재학부장은 RC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RA를 직권 면직할 수 있다.
- ⑤ 학기 도중 휴직, 사직, 면직 처리된 RA의 장학금은 해당 월 활동 일자가 지급 기준 일자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RA 의무)

- ① RA는 활동 기간 중 RC에 입주하여 생활하여야 하며, 거주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동일 시설에 거주하는 타 사생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 ② RA는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RA는 RC 사생 생활 적응과 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본 세칙 제15조에 따른 회의에 의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⑤ RC 프로그램 시행 시에 RC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안에 근거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무은재학부 행정팀에 사전 제출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를 정리하여 참가자 명단, 참가자 피드백, 프로그램 운영비 정산 내역, 활동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⑥ 프로그램 운영비는 법인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RA 개인카드 및 현금 집행을 허용한다. RA는 프로그램 운영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카드 사용 내역 및 집행 증빙 서류 일체를 무은재학부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생 참가비를 징수한 프로그램 정산 시에는 사생 참가비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고의로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정산 시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RA는 본 세칙 제12조 4항에 의거하여 면직처리 한다.
- ⑧ 각 층 RA는 사생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기록한 뒤, 해당 사실에 대해 생활관장에게 별첨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RA 조직)

- ① RA 업무의 조직적인 수행을 위해 회장단을 두고, 운영상 필요로 하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② 회장은 RA운영회의를 통해 연속 2학기 이상 RA로서 활동할 수 있으면서 리더십이 뛰어난 자로 호선한다.
- ③ 회장은 부회장, 총무(서기)를 선출하여 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고, 회장단은 연속 2학기 이상 RA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RA운영회의)

- ① RA 회장은 정기적으로 RC 운영의 실무적인 일을 심의하는 RA운영회의를 개최하여 RC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 ② RA는 RA운영회의 시 층별 활동 사항, 부서별 업무 진행상황 등 RA회장이 정하는 안건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RA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합하여 RC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RA운영회의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A 회장
2. 기타 RA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 4 장 RC 동

제16조 (사생 입사자격)

- ① RC 사생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당해 연도 학번을 기준으로 당해 및 직전 연도 학부 입학생으로 구성한다.
- ② 위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서 RC 의무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③ RC 사생이 외부 거주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학부모, RA, 마스터교수의 의견을 받아 RC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학생처장이 최종 승인하면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할 수 있다.
- ④ RC 구성원만 RC에 거주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입학학생처장이 허가한 자만 거주할 수 있다.
- 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입사제한 대상자는 입사를 할 수 없다.

제17조 (특례조치)

- ① RC에서 벌점 누적으로 인한 영구 퇴사자는 R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이 제공하는 타 주거시설에 재입사할 수 없다.
- ② RC에서 기타 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R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RC에 재입사할 수 없다.

제18조 (호실 배정)

- ① RC 사생과 RA가 거주할 호실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RA 회장이 매 학기 시작 전 배정하여 무은재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사생 생활 만족도 제고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학번, 소속 분반, 성별, 그리고 생활습관 정보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고려할 수 있다.
- ② 학기 중에는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방변경 희망 시 층 담당 RA 및 마스터 교수의 의견을 받아 무은재학부장 승인을 받아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 ③ 호실 변경은 매 학기 말 소정의 기간 동안 사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RA회장의 허

가를 득한 후 무은재학부장 승인을 받아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며, 신청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호실 변경 시 RA회장 입회하에 현재 거주 중인 호실 및 새로이 입실하고자 하는 호실에 거주 중인 사생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입, 퇴사 절차)

- ① RC 사생은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입사한다.
-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 전 방 청소 후 소속 층 RA에게 퇴사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한다.
-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기간에 모든 사생들은 RC에서 퇴사하여야 하며, 개인 물품을 호실 내에 보관할 수 없다.
- ④ 방학 기간 퇴사 시 귀중품을 제외한 개인물품은 생활관장이 허가하는 공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 (프로그램 참가 의무)

- ① RC에 거주하는 사생은 RC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참가 신청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RA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참가비를 납입한 사생은 RA가 지정하는 반환 가능한 취소 기한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참가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 ③ 프로그램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배정된다.

제21조 (전체 시설 사용)

- ① RC 내에는 음주 및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 단, 해당 마스터교수 또는 무은재 학부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1층 휴게실 및 다목적실 등 RC 부속시설 사용 및 관리 권한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RA가 우선권을 가진다.
- ③ 휴게실4는 상시적으로 개방하며, 휴게실3은 RA회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④ 다목적실은 RA운영회의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사용 할 수 있다.
- ⑤ RC 1층 로비 게시판 사용은 RA운영회의에서 정하는 관리 방침을 따른다.
- ⑥ 본 세칙 제3조에 의한 RC구성원 또는 업무 관계자만 RC에 출입할 수 있다.
- ⑦ 타동 거주 학부 재학생은 RC구성원이 동반할 때만 RC에 출입할 수 있으며, 본교 휴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및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RC구성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서에서 출입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RC에 출입할 수 있다. 이 때 출입을 허가한 부서는 RA회장에게 출입 일자와 출입 사유를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⑧ 외부인 중 RC사생의 가족에 한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A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생과 동반하여 RC에 출입할 수 있다.
- ⑨ 입주자간 이성 층 출입 및 이성 층 전용 엘리베이터의 탑승을 금지한다.
- ⑩ RC 사생수칙(별표1)을 준수하고, RC 시설 유지와 시설물 및 비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⑪ RC 로비에서 RC 프로그램 이외의 활동을 진행하는 개인 및 단체는 RA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층별 시설 사용)

- ① 간식실과 홀은 RA가 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 우선권을 가진다.
- ② 간식실 또는 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자가 사용한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③ 다리미를 사용할 경우 자리를 비우지 말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아야 한다.
- ④ 각 층별 창고에는 개인 용품을 넣어둘 수 없다.
- ⑤ 사생 주도하에 층 홀을 단체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 RA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전달 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 ⑥ 공실을 무단으로 출입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만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규정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규정 및 생활관운영규정, RC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준용한다.

제24조 (개정) 이 세칙의 개정은 RC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후 이를 공고하고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23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별표1) RC 사생수칙(개정: 2020.07.23.)

○ 주요 위반사항 및 벌점부과

위반 내용	최대벌점
1. 범죄 행위	70점
2. 이성 생활관 및 RC 이성 사용 층 무단출입 ⁽¹⁾	70점
3. 인화물질의 반입, 실화	60점
4. 개인 영리목적 행위	50점
5. 공용 비품의 고의적 파손, 외부 반출, 사유화	50점
6. 무단 출입 및 투숙 ⁽²⁾ 출입(투숙) 시킨 자 및 출입(투숙) 한 자	50점
7. 생활관 건물 내 조리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취사	20점
8. 생활관 건물 내 (옥상, 계단 및 베란다 포함) 및 건물 10미터 이내에서의 흡연	20점
9. 불허 전기용품의 반입 및 사용 ⁽¹⁾	20점
10. 허가된 전기용품 관리 부주의	20점
11. 침실 내 벽지, 장판, 카펫, 타일 등의 설치 ⁽³⁾	20점
12. 무단 침실 변경 ⁽¹⁾	30점
13. 동물 사육 (곤충/어류 포함) ⁽¹⁾	20점
14. 입, 퇴사 절차 불이행 ⁽¹⁾	10점
15. 생활관운영팀 직원 및 생활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불법거주자 벌점 부과)	10점
16. 규정을 벗어난 침실 구조 변경 ⁽¹⁾	5점
17. 생활관자치회 및 동민회 자체 규정 위반 행위 ⁽³⁾	15점
18. 복도에 빨래 등의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기타 생활관의 청결 및 안전한 관리에 반하는 행위,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25점
19. 생활관 지역 내에 학기당 10일 이상 주차하는 개인 차량의 교내 povis 미등록, 사생차량 등록증 미부착 및 주차 질서 위반 행위 ⁽⁴⁾	20점, 주차 질서 위반시 차량 견인, 견인비 입금 거부 시 50점 추가
20. 생활관 구역 내 생활관 미허가 포교 행위 및 포교 규정 위반 행위 ⁽⁵⁾	20점
21.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위반 행위 ⁽⁶⁾	70점
가. 이성 층별 엘리베이터 별도 운영 시 이성 층 엘리베이터 탑승	70점
나. RC 운영세칙에 따른 허가 절차 없이 건물 내 음주 및 주류 무단 반입	20점
다. RC 공용 공간(택배함, 우편함, 창고 등)에 개인 물품 무단 보관	10점
라. RC 운영 부서 및 RA 지시사항 불이행	10점
22. 생활관 사용료 미납 - 1회 미납 시: 경고 및 연속 미납 시의 후속조치 내용 고지 - 2회 미납 시: 생활관 출입통제 (20점) ※ 분납자의 경우: 당해학기 잔액 일시불 징구/졸업까지 분납신청 불허 - 3회 미납 시: 추가 벌점 10점 & 한 학기 퇴사 (추가 10점)	30점

- (1) 개인 또는 그룹별 사전요청이 있을 시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별점부과 면제 가능한 사항.
- (2)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는 출입(투숙) 할 수 있다.
 - 사전 승인(생활관운영팀)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대학 공익 목적에 부합할 경우 면제 가능하다. 대상은 학교와 관련이 있는 자(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 또는 외부인(대학 간의 협력, 학생교류, 입시 홍보 관련 자 등)이다.
 - 무단 투숙자는 기본 사용료의 최대 30배를 부과한다.
- (3) 동민회 재적 2/3의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 후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매학기 단위로 별점 부과 예외 또는 자체 관리가 동별로 가능한 사항.
- (4) 생활관 구역 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사본을 지참하여 대학에 등록해야 함 (신규 차량의 경우는 구입 후 10일 이내 등록) (개정: 2019.2.18)
 - 대학이 발행한 등록증을 차량 전면에 등록해야 한다.
 - 주차구역 위반차량은 생활관운영팀에서 임의 견인 조치 할 수 있으며, 견인에 발생한 비용은 위반 차량 차주 부담으로 한다. (발생비용 미정산 시 50점 추가 별점 부과)
 - 견인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대학이 책임 지지 않는다.
- (5) 생활관 구역 내에서 2인 이상 대상으로 하는 포교 행위는 사전에 생활관운영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인원, 방식 등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생활관 건물 내에서의 포교의 경우 희망사생 호실 침실 앞 또는 해당 생활관 현관에 포교활동 4일 전까지 A3 용지 이상 크기의 활동계획서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2.18)
- (6) RC에 대하여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부가적인 사생수칙은 생활관장 심의 후 일반 사생수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2.18)
- (7) (삭제: 2016.1.1.)

○ 누적 별점 및 징계 내용 (개정: 2020.7.23.)

누적별점	징계내용
5점 이상	매 5점당 생활관장이 정하는 교내 봉사 2시간
20점 이상	학부모 및 지도 교수 통보
30점 이상	다음 정규 학기 한 학기 퇴사
50점 이상	다음 정규 학기 두 학기 퇴사
70점 이상	즉시 영구퇴사 및 학생 징계위원회 회부

※ 별점 부과 및 집행은 생활관장 재량에 의할 수 있다. 30점 이상 별점 부과 사생은 1주일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생활관운영위원회는 1개월 내에 재심의 해야 한다. 재심 요구 사생은 재심위원회 소집 시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출석 요구 불응 시 해당 별점을 확정한다. (신설: 2019.2.18)

○ 별점경감 (신설: 2020.7.23.)

- (1) 별점 대상인 학생이 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점을 경감할 수 있다. 상점은 부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상점부과는 생활관장 재량에 의할 수 있다.
- (2) 상점부과

최대 상점	내용
50점	본교 및 생활관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된 자 - 사고예방 - 안전, 응급대처 및 구조
30점	생활관 자치회, 공동생활에 모범 등 선행 생활관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
20점	자치회 행사지원, 점검 보조업무, 봉사 (1점/2시간, 행사당 최대 4점/일) 생활관운영팀에서 추천한 사생
10점	호실 점검 시 청결상태가 우수한 사생 생활관 내부 문제를 사전 제보한 사생